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41
----------	-------

발의연월일 : 2022. 4. 20.

발 의 자 : 이명수 · 김상훈 · 류성걸
박완수 · 배현진 · 서일준
성일종 · 윤두현 · 최춘식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규정하여 특정 분야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법원에 선거법원장과 부를 두고, 선거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40조의8, 제40조의9, 제40조의10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위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2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종류”를 “8종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선거법원과”로 한다.

8. 선거법원

제5조제2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를 “행정법원·회생법원 및 선거법원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를 “행정법원·회생법원 또는 선거법원의”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를 “특허법원·행정법원 및 선거법원의”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를 “행정법원·회생법원 및 선거법원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를 “행정법원·회생법원 및 선거법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를 “고등법원·특허법원·선거법원의”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특허법원의”를 각각 “특허법원·선거법원의”

로 한다.

제3편에 제7장(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선거법원

제40조의8(선거법원장) ① 선거법원에 선거법원장을 둔다.

② 선거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선거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선거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9(부) ① 선거법원에 부를 둔다.

② 선거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10(심판권) 선거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44조제2항 중 “회생법원장은”을 “회생법원장, 선거법원장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 7.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u>회생법원</u> 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 -----8종류-----. 1. ~ 7. (현행과 같음) 8. <u>선거법원</u>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회생법원</u> . <u>선거법원과</u> ----- ----- ----- ----- ----- -----.
제5조(판사) ① (생략)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u>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u> 판사를 둔다. ③ (생략)	제5조(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행정법원·회생법원</u> <u>및 선거법원에</u>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u>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u>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직무대리) ① ----- ----- ----- <u>행</u> <u>정법원·회생법원 또는 선거법원</u> <u>의</u> ----- -----.

② (생 략)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② (생 략) ③ <u>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u>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⑤ (생 략) 제9조의2(판사회의) ① <u>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u>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생 략)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u>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u>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특허법원·행정법원 및 선거법원의</u>-----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판사회의) ① ----- ----- <u>행정법원·회생법원 및 선거법원과</u>-----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 -----<u>행정법원·회생법원 및 선거법원과</u>----- ----- ----- -----
--	--

② (생략)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략)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선거법원
의-----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심판권) -----

-----.

1. -----특
 허법원·선거법원의-----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44조(보직) ① (생략)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2. ----- -----<u>특허법원·선거법원의</u>----- ----- 3. (현행과 같음) <u>제7장 선거법원</u> <u>제40조의8(선거법원장) ① 선거법원에 선거법원장을 둔다.</u> <u>② 선거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u> <u>③ 선거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u>④ 선거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제40조의9(부) ① 선거법원에 부를 둔다.</u> <u>② 선거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u> <u>제40조의10(심판권) 선거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u> 제44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회생법원장, 선거법원
장은